

## 비정년트랙교원임용내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4조에 의한 비정년트랙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①비정년트랙 교원은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 교양 외국어를 전담하는 교원,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과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16.09.30.)

② (삭제 2017.02.23.)

**제3조(적용범위)** 비정년트랙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를 적용한다. 다만,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교원은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임용절차)** 비정년트랙 교원의 임용절차는 교원인사규정 제10내지 제11조의 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임용기간 및 보수)**①비정년트랙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2.25., 2018.02.22.)

1.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 : 2년
2. 교양 외국어를 전담하는 교원 : 2년(신설 2016.09.30.)
3.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 : 1년
4.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 : 신규 임용 2년, 재임용 1년. 단, 신규임용 후 1년 경과 시점에 중간평가 실시.

②비정년트랙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임용계약)** 신규 임용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로기간
2. 급여
3. 근무조건
4. 재계약 조건 및 절차

**제7조(재계약 임용 등)** ①비정년트랙 교원의 재계약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강의를 전담하는 비정년트랙 교원

3-2-33~2 제3편 행 정

가. 별표 1의 비정년트랙 교원 교육업적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나. 재계약 심사학기를 제외한 3개 학기 수업만족도 결과 80점(4.0)미만이 3과목 이하이고, 평균 85점(4.25) 이상(개정 2016.02.25., 2016.09.30.)

2. 교양 외국어를 전담하는 비정년트랙 교원(신설 2016.09.30.)

가. 별표 1의 비정년트랙 교원 교육업적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

나. 재계약 심사학기를 제외한 3개 학기 수업만족도 결과 80점(4.0)미만이 3과목 이하이고, 평균 85점(4.25) 이상

3.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하는 비정년트랙 교원

가. 별표 1의 비정년트랙 교육업적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점수 80점 이상

나. 수업만족도 결과 평균 80점 이상

다. 계약으로 약정한 연구실적 이상

4. 연구를 전담하는 비정년트랙 교원(개정 2018.02.22.)

가. 계약으로 약정한 중간평가 기준 충족

나. 계약으로 약정한 재임용 연구실적 이상. 단, 동일 논문 주저자 중 본교 교원이 2인인 경우 재임용 대상 업적으로 50/100씩 인정한다.(개정 2018.08.23.)

②중간평가 기준이나 재계약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은 당연 퇴직한다.(개정 2018.02.22.)

**제8조**(정년트랙 전환 등)①정년트랙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정년트랙전환 임용 심사를 거쳐 정년트랙 연구중점 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정년트랙전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평가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1. 정년트랙 전환 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전환 일을 기준으로 본교 재직 기간 중 발표된 최근 2년간의 실적에 한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연구실적 계열 구분은 교원인사규정 <별표 6>과 같다.

2. 최근 2년간 교육업적점수가 평균 85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연구 및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과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은 따로 정한다.

**제9조**(의무 및 금지)①본 대학교에 임용된 교원은 학내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본 대학교의 교육목적 달성에 적극 협조하여

본 대학교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본 대학교에 신규 임용된 교원은 임용 후 1년(2개 학기) 이내에 교수학습 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수업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전담교원 및 교양 영어를 담당하는 외국인 강의전담교원은 제외한다.(신설 2018.02.22.)

③비정년트랙 교원의 책임강의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책임강의담당시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계절학기 수업으로 보충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강의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강의담당 시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7.02.23.)

1.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 : 주당 15시간(개정 2016.09.30.)
2. 교양 외국어를 전담하는 교원 : 주당 18시간(신설 2016.09.30.)
3.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 : 주당 9시간
4.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 : 주당 0~3시간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책임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비정년트랙교원은 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근무기간 중 타 기관에 출강 또는 겸직할 수 없다.

⑥비정년트랙 교원의 휴직은 불허한다.

**제10조(보직임용)**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은 교육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보직 임용을 제한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의원 사직 및 면직)** ①임용기간 동안 학기 중에는 사직할수 없으며 학기말로 의원 사직하는 경우 퇴직 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9.30.)

②임용기간 중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면직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2-33~4 제3편 행 정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제7조 1항 4호의 적용은 시행일 이후 신규 및 재임용 계약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6.09.30.)

비정년트랙교원 교육업적 심사평정기준

평가영역	평정항목	기 준	배점
교육 (90점)	수업이행 상태	<input type="checkbox"/> 강의계획서 입력 충실도 및 활용도 ※ 지정기간내 100% 입력 : 5점/학기당 - 수업계획서 지정기간내 입력여부 : 1일지체시 감점 0.3점	10점
		<input type="checkbox"/> 책임시수 이행 및 출·결강 상태 ※ 책임시수 100%이상 : 5점/학기당(1시간 미달시 0.5점 감소) ※ 출강 100% : 2점/학기당(1회 결강시 0.5점 감소)	10점
		<input type="checkbox"/> 과제물 부여의 충실도 ※ 과목당 4회 이상 : 5점/학기당 ※ 과목당 3회 : 3점/학기당 ※ 과목당 1~2회 : 2점/학기당	10점
		<input type="checkbox"/> 성적평가의 공정·타당성 ※ (가)과제물, (나) 출·결석 점검후 성적반영 - (가)항, (나)항 모두 적용시 : 5점/학기당 - (가)항, (나)항중 1개항 적용시 : 3점/학기당 ※ 성적입력 기간내 미입력시 :1일지체시 감점 0.5점	10점
	수업만족도	<input type="checkbox"/> 수업만족도 ※ 90점~100점 25점/학기당 ※ 80점~90점미만 20점/학기당 ※ 70점~80점미만 15점/학기당 ※ 60점~70점미만 10점/학기당 ※ 50점~60점미만 5점/학기당 ※ 50점 미만 0점/학기당	50점
봉사 (10점)	교내봉사 활동	<input type="checkbox"/> 학교발전기여도 ※ 제안, 발표 1건 이상 : 5점 ※ 발전기금 유치실적 1건 이상 : 10점 ※ 행사유치 실적(1건당 5점) 가) 국제 및 전국규모 공모전, 학술 및 경기대회 나) 심사, 심판 진행 및 준비 책임자에 한함 다) 국제행사는 3개국 이상이 참여한 경우 인정 ※ 기타 학교발전에 기여 : 5점	가산점 최대10점
		<input type="checkbox"/> 학교행사 참여도 ※ 학교 공식행사 참여(행사 1회 불참시 2점 감점) ※ 외국인 비정년트랙 교원소속대학 행사(교육,연수 등) (행사 1회 불참시 2점 감점)	10점
계		100	

(별표 2)(개정 2016.05.24.)

### 정년트랙전환 재계약임용 연구실적

\* 강의전담 · 연구 및 강의담당 교원

계열	연구실적		
	강의전담(2년)	연구 및 강의담당 (2년)	
인문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600% (단, 국제전문학술지 이상 300% 포함)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670% (단, 국제전문학술지 이상 350% 포함)	
사회			
이공A	SCI급 학술지 600% (단, 국제전문학술지 이상 400% 포함)	SCI급 학술지 670% (단, 국제전문학술지 이상 450% 포함)	
이공B	SCI급 학술지 600% (단, 국제전문학술지 이상 400% 포함)	SCI급 학술지 670% (단, 국제전문학술지 이상 450% 포함)	
이공C	SCI급 학술지 600% (단, 국제전문학술지 이상 400% 포함)	SCI급 학술지 670% (단, 국제전문학술지 이상 450% 포함)	
이공D	SCI급 학술지 600% (단, 국제전문학술지 이상 400% 포함)	SCI급 학술지 670% (단, 국제전문학술지 이상 450% 포함)	
의학	SCI급 학술지 600% (단, 국제전문학술지 이상 400% 포함) ※의과대학 소속 임상의학 교원은 따로 정함.	SCI급 학술지 670% (단, 국제전문학술지 이상 450% 포함) ※의과대학 소속 임상의학 교원은 따로 정함.	
예체능	이론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600% (단, 국제전문학술지 이상 300% 포함)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670% (단, 국제전문학술지 이상 350% 포함)
	실기	국내A급 이상 공연 및 전시 700% (단, 국제전문 이상 공연 및 전시 400% 포함, 연기예술학과는 국제일반 공연 400% 포함)	국내A급 이상 공연 및 전시 800% (단, 국제전문 이상 공연 및 전시 500% 포함, 연기예술학과는 국제일반 공연 400% 포함)
특기 사항	1) 이공C계열의 계획·설계 전공자 및 보건과학대학(의공학과 제외) 소속 교원에 한하여, 필수조항인 SCI급 이상 학술지 실적은 SCOPUS학술지와 국내저명학술지논문으로 대체가 가능함. 다만, SCOPUS학술지논문은 재계약기준의 1.5배수, 국내저명학술지논문은 재계약기준의 2배수를 달성하여야 대체 인정이 가능함. 2) 의학계열 한의과대학 교원의 국제전문학술지 이상 학술지는 국제일반학술지로 대체 가능 (1:0.75 비율로 계상함) ※ 의학계열 한의과대학 원전학 전공은 사회계열에 준함 ※ 국내저명학술지 이상이란, 국제저명, 국제전문 국제일반 및 국내저명학술지를 의미함 ※ 예체능계열에서의 실기를 주로 하는 교원이란, 연구의 주된 실적을 공연, 전시 및 선수 본인으로 참여 하여 취득한 경우를 의미함. ※ 의예과 인문사회의학(예방의학, 의학교육학, 의학통계학, 의사학, 의료인문학)교원은 사회계열에 준함		
실적물 인정 범위	‘교원연구실적평가 시행에 관한 세칙’에 의함		
인정 환산율	‘교원연구실적평가 시행에 관한 세칙’에 의하되 ※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말한다)는 당해 논문 또는 저서 등에 주저자로서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기된 경우와 해당 교원이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